

# 집합투자기구 사전 자산배분 기준

2004. 06. 17 제정  
2009. 02. 04 전면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투자대상 자산)** ① 이 기준은 회사 내 운용담당자 등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은 증권투자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를 포함하여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의 단서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서에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개정절차 없이 관련법규의 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전거래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6.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7.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 금리 또는 채권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등)**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별로 관리하여야 하여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펀드”라 함은 담당자가 법 제9조 제18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펀드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담당자”라 함은 펀드를 운용하는 직원 말한다.
4. “매매담당자”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5조(자산배분 원칙)**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펀드별로 취득,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단, 균등한 가격은 다수의 펀드에 대해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동일한 종목에 대한 펀드별 배분은 지정가격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접수순으로 배분한다. 이때, 주문시간이 다른 동일한 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
- ④ 취득,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펀드별 배분 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 ⑤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법규 등(집합투자규약, 운용계획서 포함)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2.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액의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
  3. 위 사유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제6조(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 ① 자산의 취득,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매매주문서의 작성)**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 주문금액 또는 수량, 가격, 주문시간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 증권업협회 채권종류별,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범위 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종목에 대한 매매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 수량만을 작성하고,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매매주문의 집행)** ①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산배분내역서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 배분가격 등이 기재하여야 한다.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금지)** ① 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3.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4.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11조(공시)** 회사는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면 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사전배분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은 이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